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20. 장덕준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0.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장덕준 의원】

가. 제안이유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고 있는 내용 삭제(안 제10조)
- 적용 규칙의 명칭 정비(안 제1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개정조례안은 장덕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고 있는 조문 삭제에 관한 내용임.
- (안 제12조)에 적용 규칙의 명칭 정비에 관한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인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취지를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